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444호
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2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
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'22.10.6일 발표한 「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」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범위 축소(안 제4조)

원칙적으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판단 기준을 자산 1천억원 이상 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

- 나. 한국회계기준원(이하 기준원) 소관업무 명확화(안 제7조) 회계기준위원회 심의대상을 회계처리기준 제·개정 및 해석으로 한정하고,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기준원 위탁업무에 포함
- 다.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(안 제9조)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대상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주식 회사 범위(자산 1천억원 이상→5천억원 이상)에 맞게 축소
- 라. 비상장회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축소(안 제15조)
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기준을 변경 예정인 대형
 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(자산 1천억원 이상→5천억원 이상)
- 마. 부정행위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사유 정비 등(안 제31, 32조) 감경사유는 기존 요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신설하고, 기존 감면 요건은 면제사유로 적용

3. 의견제출

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(수)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 aking.go.kr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
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기업회계팀, 02-2100-2693, FAX: 2100-2678, e-mail: skmagic21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 - 일반우편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
 - 전자우편 : skmagic21@korea.kr
 - 팩스 : 02-2100-2678
- ※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(안)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
 (http://www.fsc.go.kr → 지식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에
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